

27. 수표금 청구

☐ 수표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스스로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발행한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한도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수표 표면에 '100만원 이하'라고 인쇄된 가계수표 용지에 발행인 스스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15,000,000' 원으로 액면금을 기재하여 제3자에게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배서양도받은 경우, 발행인으로서의 소지인이 당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에게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 수표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여러 장의 당좌수표 중 일부가 지급된 경우, 나머지 수표금 채무까지 법정추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45조 제1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일시에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 수표의 발행행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그 수표금 채무도 수표마다 별개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당좌수표 중 일부가 거래은행에서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당좌수표의 수표금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당좌수표의 발행행위를 추인하였거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8438 판결)

☐ 수표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800,000원 및 위 돈 중 537,600,000원에 대하여는 20○○. 10. 22.부터, 629,2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각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회사의 승낙 없이 대표자의 명칭을 참칭한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지 여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 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 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 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4다50908 판결)

☐ 수표금 청구(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백지수표 취득자가 그 보충권의 내용을 조회하여 보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어음법 제10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어음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음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1978.3.14. 선고 77다2020)은, 비록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의 규정과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은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백지수표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0945 판결)

☐ 수표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2. 2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단, 주위적으로 수표금 청구로서, 예비적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함).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가 진정된 것이었다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조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수표가 위조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소지인이 그 금액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익에 지나지 아니할 뿐, 수표의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라면 그 소지인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수표의 위조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지인이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판결)

☐ 수표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윤〇〇, 피고 〇〇주식회사는 연대하여 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인신청으로 소외인이 원·피고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법원이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비록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인이 피고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증인신청으로서 그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소외인이 피고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론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24626 판결)

☐ 수표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외화채권)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0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발행지 및 지급지가 이집트인 수표를 한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한 적용법규

이집트 상법 제160조, 제166조의 각 규정들은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이나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지급될 어음의 제시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것이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의 소지인이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 있는 경우의 지급제시기간까지는 규정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경우에만 이집트상법의 위 각 규정이나 제169조를 유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발행지 및 지급지가 이집트이고 이집트인이 발행한 수표를 한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하여는 이집트상법의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427 판결)

☐ 수표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나머지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공무원과 거래행위를 한 자가 그 사무집행의 부적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가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외관상 직무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행위의 외형에 대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어서 제3자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사무집행의 부적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우체국분임 현금출납공무원명의로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교부받았는데 그 당시 채무자의 처가 우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위 수표는 어느 우체국에서든지 즉시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일정기간경과 후 차용한 금원을 반환하고 회수하여 간다는 조건으로 교부받은 점, 그 후 채권자는 위 수표발행일로부터 2,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위 수표의 지급제시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채무자의 처가 위 수표의 발행행위 등 직무상의 비위사실로 말미암아 고발된 후에야 비로소 지급제시하기에 이르렀다면 채권자는 위 수표의 취득당시 채무자의 처의 위 수표발행행위가 직무상 정당하지 아니함을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국가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서울고법 1989. 6. 5. 선고 88나37869 판결)

[참조판례] 용통인이 용통수표 제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용통인이 피용통인에게 신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통인과 피용통인 사이에 당해 수표에 의하여 자금유통의 목적을 달성한 때는 피용통인이 용통인에게 지급자금을 제공하든가 혹은 당해 수표를 회수하여 용통인의 배서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용통인이 당해 수표를 사용하여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이를 반환받은 때에는 위 합의의 효력에 의하여 피용통인은 용통인에 대하여 용통인의 배서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을 다시 금융의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용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용통인이 당해 수표가 용통수표이었고, 제3자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용통인이 피용통인에 대하여 그 재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용통인은 위 용통수표 제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 수표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1) 원고 이○○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 12.부터, (2) 동국○○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동월 28.부터, (3) 동 임○○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동년 2.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가계수표상의 기명날인이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다른 경우 지급은행의 보증책임유무 가계수표의 보증카드에 영인된 인영은 통상 지급은행에 신고된 인영과 동일할 것이지만 만약 어떤 이유에 의하여 신고된 인영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계수표상의 인영은 보증카드의 인영과 대비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가려야 하며 가계수표상의 인영이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설사 육안으로 보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것이 객관적으로 일치(동일)하지 아니한다면 은행에게 보증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5다카1664 판결)

☐ 수표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수표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2,328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한 20〇〇. 5. 1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예입된 수표가 부도된 경우 은행의 조치

은행이 만일 예입받은 수표가 부도가 된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그 수표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든가 혹은 즉시 당해 수표를 예금자에게 반환하고 그 대신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 수표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12. 11.부터 이 사건 제소조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는 없으나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표의 효력(유효)

[다수의견]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판결)

☐ 수표금 청구(본소) · 수표반환 청구(반소)

(본 소) (중첩관계)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46,325,2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 소)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이하 (주)로 표시} 국제에게 수표번호 마가 00000555, 금액 446,325,227원, (주)국제 발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별소를 반소 형태로 병합 심리한 사례

수표금청구소송과 수표반환청구소송이 각각 별소로 제기되었으나 반소 요건과 병합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소송경제와 심판의 편의를 위하여 후자를 전자의 반소 형태로 병합·심리한 사례.(서울지법 1997.12.4. 선고 97가합32500 판결)